

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자 치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고 일 준

#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,
- 나.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능 특성화 및 각 기관간 협동계획,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(안 제2조).
- 나.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, 임명함(안 제3조).
- 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(안 제4조~제7조).

라.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조사, 연구,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
마.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

이 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

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.

### 나. 안 제9조의 서면심의에 대하여

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심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나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.

그러나 안 제9조를 보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한계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,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# **다. 안 제11조의 수당 등에 대하여**

위원회 참석수당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고 있으므로, 개별 조례에서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하겠으나,

기존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, 본 조례에서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음.

그러나 표현에 있어서는 타 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 라. 체계 · 자구 검토의견

기관(위원회, 협회 등), 단체(공단, 공사, 조합 등), 기금 등의 명칭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예외로 붙여 쓰기를 하므로 조례제명 중 위원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함.

- 충청북도 ∨ 혁신도시관리위원회 ⇒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

조 제목은 조를 설명하는 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조와 조 제목은 다음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함.

- 제1조 ∨ (목적) ⇒ 제1조(목적)

안 제1조 중 “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의 ‘~에 의하여’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으로 ‘~에 따라’로 쓰며, ‘의 규정’은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함.

-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⇒ 시행령 제32조에 따라

법문에서 용어정의 · 약칭 · 총칭 · 준용용어 · 인용 등에는 큰따옴표(“ ”)를 사용하므로,

안 제2조 본문과 안 제3조제2항의 약칭은 큰따옴표를 사용함.

- 제2조 본문 중 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 ⇒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- 제3조제2항 중 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 ⇒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

붙임 :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